

# 2018년도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시행(안)

## 1. 시행근거

- 「축산법」 제12조 [법률 제14304호, 2017. 3. 21.][시행 2017. 9. 21.]
- 「축산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 [대통령령 제29041호, 2018. 7. 10, 일부개정 [시행 2018. 9. 1.]
-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16조, 제18조, 제51조 [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호, 2018. 7. 12. 일부개정] [시행 2018. 9. 1.]

## 2. 2018년도 시험시행 일정(예정)

구 분	시 기	장 소	합격자발표	이의제기 가능기간
시행공고	10. 19.(금)	농촌진흥청 누리집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		※ 이의제기 방법 : <a href="mailto:suna722@korea.kr">suna722@korea.kr</a> 로 의견제출서 제출 ※ 의견제출서(별지 11호 서식)
원서접수	10월 하순~ (15일간)	진학사 누리집		
필기시험	12. 8.(토)	한국농수산 대 학	12. 12.(수)	12. 13.(목)~19.(수) (합격자 발표 후 7일간)
실기시험	12. 22.(토)		12. 27.(목)	12. 28.(금)~ '19. 1. 7.(월) (합격자 발표 후 10일간)

- 합격증 교부: 2018. 12. 27.(목)~
- 추가합격자: 이의제기 가능기간 이후 해당자 개별 통보
- ※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자는 개별통보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통보

## 3. 시험과목

구 분	시험 과목명	비 고
필기과목 (5과목)	축산학개론	※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- 대 상: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자 - 면제과목: 4과목 (축산학개론, 가축번식학, 가축육종학, 가축인공수정실기)
	축산법	
	가축전염병 예방법	
	가축번식학	
	가축육종학	
실기과목	가축인공수정실기	

## 4. 시험방법

- 필기시험: 객관식 4지 택1형, 과목별 20문항
- 실기시험: 작업형

## 5. 응시제한

- 「축산법」 제12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나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다.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. 다만,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- 접수기간(예정): 10월 하순~11월 초·중순
- 접수처: (주)진학사 누리집([www.jinhak.com](http://www.jinhak.com))
- 가. 응시원서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증명사진 등록
- 나. 시험과목 일부면제자: 면허증 사본 jpg, gif 등 파일로 원서접수시 등록
  - ※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란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
- 응시수수료: 6,000원

## 7. 합격자 결정방법

-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
  - ※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## 8. 합격증 발급

- 발급처: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(주)진학사 누리집([www.jinhak.com](http://www.jinhak.com))에서 응시자(본인) 직접 인쇄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 (전화번호: _____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